

형법 일부개정 법률안

(서지영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802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24. 8. 13.

발의자 : 서지영 · 조승환 · 이현승
성일종 · 김선교 · 송언석
김용태 · 김도읍 · 박충권
서천호 · 서일준 · 김승수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 「형법」은 가정 내부의 문제에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아 권리행사방해, 절도, 사기 · 공갈 및 횡령 · 배임 등 주요 재산범죄에 있어서는加害者와 피해자 간의 일정한 친족관계를 요건으로 하여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(제328조, 제344조, 제354조, 제361조 및 제365조 등).

그러나 가족 간의 재산 분쟁이 많아지고 유대관계가 약해진 오늘날에는 이러한 규정의 의미가 퇴색되었다는 지적이 증가하고 있고, 현 법재판소도 같은 취지에서 「형법」 제328조제1항에 대하여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였음(현재 2024. 6. 27. 2020헌마468등).

이에 친족관계가 있는 사람 간의 재산범죄를 반의사불벌죄로 변경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한 처벌하도록 하고,

그 밖에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(안 제328조 등).

형법 일부개정법률안

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2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328조(친족 간의 범행) ① 친족 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

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.

② 제1항의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

제365조제1항 중 “第328條第1項, 第2項”을 “제328조제1항”으로 하고,

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“免除한다”를 “免除할 수 있다”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